

궁금해요!

긴급자동차 교육 의무화



1.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2. 긴급자동차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3.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?
4.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난 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?
5.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?

긴급자동차 교육 의무화

‘17.10.24.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법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‘18.04.25.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Q1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

ex : 소방차, 구급차, 혈액공급차량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

ex :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,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도로, 전기, 가스, 전신, 전화 사업기관 소속 차량

“
법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
”

Q2 긴급자동차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
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‘18.04.25. 부터 1년 이내(‘19.04.24. 까지)에 받아야 합니다.



Q3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?

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 되어 진행됩니다.

신규 교통안전교육 :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.

정기 교통안전교육 :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.

Q4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난 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?

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.

“
예를 들어, 2018.05.10에 교육을 받으셨다면
2021.01.01~2021.12.31 까지
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.
”

Q5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?

긴급자동차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, 주요 교통사고 사례,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,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,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
궁금해요!

긴급자동차 교육 의무화



- 만약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- 긴급자동차 교육의 수강료는 얼마인가요?
- 긴급자동차 교육 수강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?
-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교육 이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Q6 만약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160조(과태료) 제2항 제6호에 따라 **2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Q7 긴급자동차 교육의 수강료는 얼마인가요?

신규 교통안전교육: 3시간 / 18,000원,
정기 교통안전교육: 2시간 / 12,000원 입니다.

Q8 긴급자동차 교육 수강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?

수강료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Q9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, 일정 선택 후 예약을 하신 뒤 교육 당일 인터넷으로 출력하신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이후 신분증을 제시 후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고,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.



Q10 교육 이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-> 교육 이수증 출력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지역	도로교통교육장 명	전화번호
서울	강남 도로교통교육장	(02)3498-2063
	강북 도로교통교육장	(02)3392-5621
부산	부산 도로교통교육장	(051)629-9171
대구	대구 도로교통교육장	(053)659-6169
인천	인천 도로교통교육장	(032)830-6169
경기	경기 도로교통교육장	(031)8006-1125
	의정부 도로교통교육장	(031)876-0820
강원	강원 도로교통교육장	(033)250-9152
	강릉 도로교통교육장	(033)652-7950
충북	충북 도로교통교육장	(043)717-7175
	충주 도로교통교육장	(043)717-7175
대전	대전 도로교통교육장	(042)520-0171
충남	예산 도로교통교육장	(042)520-0186
전북	전북 도로교통교육장	(063)281-6146
광주	광주 도로교통교육장	(062)530-6187
전남	광양 도로교통교육장	(061)761-8797
	경북 도로교통교육장	(054)478-6161
경북	안동 도로교통교육장	(054)858-8819
	포항 도로교통교육장	(054)478-6161
울산	창원 도로교통교육장	(055)270-6133
경남	울산 도로교통교육장	(052)216-1703
제주	제주 도로교통교육장	(064)710-9142

